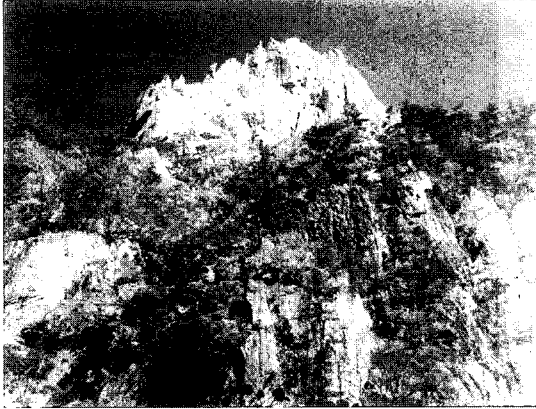


## 국립공원 구역조정



환경부는 '97년부터 3년간 진행하여 온 국립공원 구역조정에 대해 지난달 환경부(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안을 보면 현재의 국립공원 총면적 6,473 km<sup>2</sup>에서 247km<sup>2</sup>(여의도 면적 83배) 증가된 6,720km<sup>2</sup>로 확대하여 공원자원 보전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상공원내 읍·면 소재지를 공원구역에서 해제하고 밀집취락지구를 확대 지정하였다. 이번 안은

작년 6월에 발표된 환경부 시안에 대하여 주민 및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한 것으로 이해관계자인 주민대표와 환경단체, 학계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한 구역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중앙의 총괄협의회에서는 현지확인 등 수차례 진지한 토의를 거쳐 개별 지역 및 유형별로 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시·도 지역협의회에서 지역 실정과 지형을 고려한 세부적인 조정안을 제출받아 이를 다시 협의하는 등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조정하고자 노력하였다. 환경부는 이번 안을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와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한 후 공원위원회 심의 등 법적 절차를 거쳐 공원계획을 변경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편집부>

발표된 환경부(안)을 살펴보면

첫째, 공원보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 공원주변에 자원성이 양호한 지역 290km<sup>2</sup>를 편입하여 공원구역을 확대하였는 바 이는 환경부 당초 시안보다 20km<sup>2</sup>을 확대한 면적이다
- 주요편입예상지역 : 오대산국립공원 계방산지역(31km<sup>2</sup>), 설악산국립공원 점봉산지역(17km<sup>2</sup>), 계룡산국립공원 금수봉지역(5km<sup>2</sup>)
- 취락지구 및 집단시설지구 면적을 축소하여 자연환경지구로 편입하였고
- 자연환경지구를 행위제한이 가장 엄격한 자연보존지구로 대폭 확대하는 등 보전위주로 조정하였다.

둘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 공원으로서는 가치가 없는 경계부에 위치한 취락과 대규모 농경지 등 43km<sup>2</sup>를 해제하였다. 이는 당초 시안의 21km<sup>2</sup>보다 배나 증가한 것이나, 공원으로서는 가치가 없는 해상공원의 읍·면소재지와 북한산 국립공원내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이 해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 현재의 취락지구를 자연취락지구와 밀집취락지구로 구분하여 행위제한이 다소 완화되는 밀집취락지구는 당초 109개소에서 166개소로 57개소를 확대·지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였다. 이는 당초 밀집취락지구를 20호이상 거점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으로 지정하던 것을 20호이상 법정어항과 50호이상 지역은 도시기능을 수행한다

고 보아 추가한 것이다.

- 집단시설지구로 지정된 후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개·보수가 어려워 민원의 온상이 되었던 바 10년이상 장기간 개발이 되지 않는 지역은 이를 폐지, 축소하여 취락지구로 지정하거나 공원구역에서 해제하였다.

당초 시안에는 10개 집단시설지구를 폐지하였으나 이번안에서는 17개소를 폐지하여 민원해소에 더욱 노력하였다.

- 또한 자연환경지구내 5호이상의 취락을 자연취락지구로 신규로 지정하였다.

이번 구역조정으로 혜택을 보게 될 주민은 해제 24천명, 취락지구 신규지정, 밀집취락지구 지정 45천명으로 공원내 거주주민 111천명의 63%에 해당하는 69천명이 될 전망이다

셋째, 이번 구역조정으로 해제되는 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 해제대상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 용도지역지정 등으로 친환경적인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후에 해제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수립해 오면 이를 공 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환경성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제로 할 계획이다.

- 개발시 사전환경성 검토를 철저히 하여 오염이 많이 배출되는 시설, 주변 경관을 해치는 고층건물 또는 유흥업소가 난립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 한편, 해제될 경우 대부분 국토이용관리법상 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준농림지역으로 지정되는 바 건교부가 이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무질서한 개발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 자연환경보전지역 :

건폐율 60%이하 → 20%이하  
용적률 400%이하 → 80%이하

• 준농림지역 : 건폐율 60%이하 → 40%이하

용적률 400%이하 → 80%이하

## I. 구역조정 추진배경 및 경과

### 1. 추진배경

○ 국립공원내 엄격한 행위제한에 따른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및 재산상의 불이익 등의 민원 해소와 공원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추진

- 이에 따라 자연공원법을 개정('95.12.30, 내무부)하여 10년마다 공원구역을 조정토록 함

### 2. 추진경과

#### □ 구역조정 시안발표

○구역조정기준 확정 : '99. 7. 19

○구역조정 시안 발표 : 2000. 6. 30

#### < 구역조정기준 >

##### 가. 공원구역조정

○해제 : 경계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자원성, 지역별 타당성 등을 평가하여 공원으로서 가치가 적은 지역 중 환경성평가를 거쳐 해제후보지역으로 선정

○편입 : 공원인접지역 중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국·공유지 위주로 편입

##### 나. 용도지구 조정

○현재의 4개 용도지구(자연보존, 자연환경, 취락, 집단시설지구)를 5개 용도지구로 조정

- 취락지구를 자연취락과 밀집취락으로 세분화하여 20호이상 취락이 밀집된 지역 중 거점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을 밀집취락지구로 지정

- 자연환경지구내의 5호이상 취락을 자연취락으로 신규지정

- 취락지구 범위를 축소하여 자연환경지구 확대

○집단시설지구 조정 : 장기간 개발이 안되고 있는 곳은 폐지 또는 축소

○자연보존지구 확대 :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을 자연보존지구로 편입

○보호구역 조정 : 자연환경이 우수한 보호구역은 공원구역으로 편입

□ 주민의견에 대한 구역조정협의회 협의

- 시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 2000. 7~8월
- 구역조정협의회 구성 및 협의 : 2000. 9~12월 (4회개최)
  - 구역조정 협의회 구성
    - 총괄협의회 : 환경부, 주민대표, 환경단체대표, 시·도대표, 관계전문가, 국립공원관리공단, 조계중(총11인)
    - 지역협의회 : 시·도공무원, 주민대표, 환경단체대표, 관계전문가, 공원관리사무소, 시·군 주민대표 및 공무원 (총 11인 이내)
- 시·도협의 : 2001. 1월 중순

< 주요협의내용 >

- 가. 공원구역 조정
  - 해제 및 편입기준에 맞추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지역협의회에서 조정
- 나. 용도지구 조정
  - 밀집취락지구 지정 확대
    - 법정어항 중 20호 이상 밀집된 지역 및 거점 기능이 없는 50호이상 밀집된 취락을 추가
  - 취락지구의 경계범위는 현지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협의회에서 조정
  - 집단시설지구내 세부 시설지는 지역협의회에서 조정

II. 향후계획

- 관계부처협의 및 공원위원회심의 등 법적절차 이행 : 2001년 상반기
- 공원계획변경 결정·고시 : 2001년 상반기
- < 해제 후보지역 관리방안 : 先 계획 - 後 해제 >
  - 자치단체가 난개발 방지계획을 수립하여 공원위원회 심의 후 해제
  - 난개발 방지수준은 최소한 밀집취락지구내 행위제한 수준이며 공원지역과 경관상 조화를 이루어야 함

III. 효과

□ 환경친화적 공원관리

-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의 공원구역 신규편입 및 자연보존지구 확대로 보전위주의 공원관리기반 확립

□ 주민불편 해소

-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낮은 지역의 해제, 자연취락지구 신규지정 및 밀집취락지구 지정으로 주민불편 해소
  - 총 수해 가구수 및 인구 : 24천가구, 69천명(공원내 거주주민 111천명의 63%)
  - 해제 가구수 및 인구 : 8천가구, 24천명
  - 신규 자연취락지구 지정 가구수 및 인구 : 2천가구, 4.5천명
  - 밀집취락지구 지정 가구수 및 인구 : 14천가구, 41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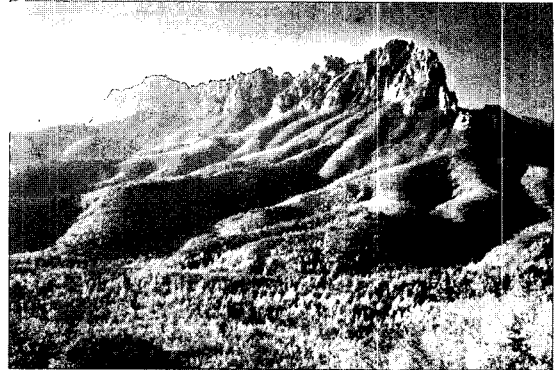
구역조정 면적 비교  
(시안 vs 조정안)

	시안	조정안
○해제	29개소, 21km <sup>2</sup>	⇒ 86개소, 43km <sup>2</sup>
○편입	67개소, 270km <sup>2</sup>	⇒ 68개소, 290km <sup>2</sup>
○자연취락지정	550개소, 36km <sup>2</sup>	⇒ 457개소, 26km <sup>2</sup>
○밀집취락지정	109개소, 21km <sup>2</sup>	⇒ 166개소, 25km <sup>2</sup>
○집단시설지구	10개폐지, 42개 축소	⇒ 17개폐지, 35개 축소

(단위 : km<sup>2</sup>)

구분	현행	시안 (2000.6.30)	조정 (구역조정협의회 협의 후)
□총면적	6,473	6,722	6,720
- 해제		21	43
- 편입		270	290
- 순증		249	247
- 육지면적	3,824	4,010	4,040
• 해제		13	32
• 편입		199	248
• 순증		186	216

구 분	현 행	시 안 (2000.6.30)	조 정 (구역조정협의 회 협의 후)
○자연보존지구	553	1,549	1,549
○취락지구	자연	-	36
	밀집	-	21
○집단시설지구	27	19	16
○자연환경지구	5,797	5,097	5,104



주요 조정지역 현황

□ 해제지역

공 원 명	위 치	면적(km <sup>2</sup> )	비 고
계 룡 산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동 일원	0.129	
한 려 해 상	경남 남해군 상주면 소재지 등 2개소	1.079	
속 리 산	충북 괴산군 청천면 송면리 일원	2.232	
북 한 산	서울시 성북구 정릉3동	0.288	430가구, 1,023명 306가구, 1,520명
	서울시 도봉구 도봉1동	0.121	
덕 유 산	전북 무주군 설천면 두길리	0.953	
오 대 산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일원	1.445	
태 안 해 안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만리포)	1.236	
다도해해상	전남 완도군 보길면소재지 등 8개소	4.896	
치 악 산	강원도 횡성군 신림면 성남리	0.496	
변 산 반 도	전북 부안군 변산면 일원 (변산해수욕장)	0.596	

□ 편입지역

공 원 명	위 치	면적(km <sup>2</sup> )	비 고
지 리 산	경남 하동군 화개면, 청암면 일원	13.384	
계 룡 산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북동 (금수동)	5.020	
한 려 해 상	경남 남해군 이동면 신정리	3.656	
설 악 산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양양군 서면 (점봉산 일원)	16.850	
	강원도 인제군, 고성군 일원 (신선동)	24.350	
속 리 산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삼가리, 만수리	3.538	
한 라 산	제주도 남제주군 남원읍 신계리	2.745	
내 장 산	전북 정읍시, 순창군 일원	2.896	
가 야 산	경남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11.511	
덕 유 산	전북 무주군 적상면 포내리	8.061	